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8. 19 선고 2020가단5194268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명

담당변호사 임남구, 김유신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1. 6. 24.

판 결 선 고 2021. 8.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34,435,21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아들인 C은 2000. 9. 21. 원고와, 피보험자 피고, 상해수익자 C, 보험기간 2000. 9. 21.부터 2042. 9. 21.까지로 정하여 피보험자가 질병 등으로 인하여 입원할 경우 수익자에게 입원일 상당의 입원급여를 지급하는 ‘D’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C은 2009. 10. 13. 원고와, 피보험자 피고, 상해수익자 및 사망수익자 C, 보험기간 2009. 10. 13.부터 2998. 3. 22.까지로 각 정하여 피보험자가 질병 등으로 인하여 입원할 경우 수익자에게 입원일 상당의 입원급여를 지급하는 ‘E’ 계약(이하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제1보험계약과 함께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로 사기죄로 약식기소되어 2017. 2. 15. 피고에게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었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고약9760, 이하 ‘이 사건 약식명령’이라 한다), 위 약식명령은 2017. 3. 3.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는 2012. 10. 18.부터 같은 해 11. 17.까지 31일 동안 F가 운영하는 서울 은평구 G빌딩 4층에 있는 H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서 사실은 입원할 정도의 질병이 없었음에도 마치 심방세동,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으로 입원이 필요한 것처럼 위 병원 의사에게 부탁하여 입원을 하는 등 2012. 10. 18.부터 2014. 5. 14.까지 모두 7회에 걸쳐 병명을 바꾸어 가면서 입원을 한 후, 원고로부터 2012. 12. 12.부터 2014. 6. 2.까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34,435,217원(이하 ‘이 사건 보험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피고가 이 사건 약식명령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21. 2. 15. 재심청구가 기각되었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20재고약18), 이에 대해 피고가 항고하였으나 2021. 3. 29. 항고가 기각되었으며(서울서부지방법원 2021로6), 이에 대해 피고가 재항고하였으나 2021. 6. 4. 재항고가 기각되었다(대법원 2021모982).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았는데도 병원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고, 원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피고가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었으므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금지급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처음부터 원고는 피고의 입원치료를 이유로 한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었던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아무런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보험금 상당의 이익을 얻었거나, 원고로부터 이 사건 보험금 상당액을 편취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이 사건 보험금 상당액인 34,435,21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실제로 입원 치료의 필요가 있어 치료를 받은 것이고, 당시 담당의사의 판단에 따라 입원한 것이며, 피고와 함께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 및 이 사건 병원 의사인 F도 사기죄 또는 사기방조죄로 약식기소되었으나, 정식재판을 청구한 결과 모두 무죄가 선고되었음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허위로 입원한 것이 아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관련 형사판결에서 인정한 사실은 민사재판에 있어서도 유력한 증거가 되기는 하나 민사재판에 있어서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형사재판의 사실인정과는 다른 사실을 인정하였다고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2. 2. 26. 선고 99다67079 판결 참조).

2)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아래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하나, 입원실 체류시간만을 기준으로 입원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갑 제1, 8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었음에도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장기간 입원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보험금 상당액을 편취하거나 부당이득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입원치료의 필요성과 상당성은 전문가인 의사가 환자의 질병, 건강상태 등을 개별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으로서 그 판단을 신뢰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존중되어야 하므로, 실제 치료행위를 한 의사의 판단을 신뢰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 제시나 증명이 없다면 곧바로 해당 입원치료가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과잉 입원치료라고 보기 어렵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실제 치료행위를 한 의사의 판단을 신뢰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

② 피고처럼 이 사건 병원에서 장기간 입원 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수령한 I, J, K, L(이하 이들을 통칭할 때에는 ‘I 등’이라 한다)도 ‘사실은 입원할 정도의 질병이 없었음에도 마치 질병으로 입원이 필요한 것처럼 이 사건 병원 의사에게 부탁하여 입원을 한 후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사기죄로, 이 사건 병원의 원장인 F는 ‘I 등과 피고가 사실은 입원할 정도의 질병이 없어 입원이 필요하지 아니함에도 질병의 종류를 바꾸어 가면서 입원을 요청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I 등과 피고가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함으로써 I 등과 피고의 보험금 편취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사기방조죄로 피고와 같은 날 각

약식기소되어 2017. 2. 15. I 등과 F에게 벌금 100만 원 등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고약9760). I 등과 F는 위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각 청구하였으나, 제1심법원은 2018. 2. 9. I 등의 사기죄와 F의 사기방조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고정195).

③ 이에 대하여 I 등과 F가 항소하였다. 항소심법원은 2018. 8. 16. ‘I 등의 입원치료가 실질적으로는 통원치료였다거나 입원이 필요하지 않음에도 이 사건 병원 의사에게 요청하여 입원한 후 입원보험금을 편취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I 등의 사기죄에 대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하였다. 또한 위 법원은 같은 날 ‘F가 입원치료를 결정하면서 직접 정밀검사를 하지는 않고 입원을 원하는 환자들의 의사를 중요하게 보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환자들의 건강상태, 다른 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를 종합하여 입원을 결정하는 점, 피고는 경찰조사에서 실제 아파서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가 입원한 병명은 한 차례 바뀌었을 뿐이며 두 번째 병명도 다른 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수술치료도 받은 것인 점, 피고가 F에게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입원을 요청하였다거나 F가 이에 관여하거나 용인하였다고 볼 만한 다른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F의 I 등에 대한 사기방조죄와 함께 피고에 대한 사기방조죄에 대하여도 모두 무죄를 선고하였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8노278). 이에 대하여 검사가 상고하였으나 2019. 1. 17. 상고가 기각되어 위 항소심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2018도13896).

④ 피고는 경찰조사를 받을 당시 실제 아파서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에게 자신의 질병이나 상해가 입원치료가 불필요한지 객관적으로 알 수 있을 정도의 의학적 지식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며, 피고가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F 등 이 사건 병원의 의사에게 입원치료를 요구하였다고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도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상훈